



지난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에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해 농진청, 농생명연구협의체 22개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갖고 있다.

# 아시아 농생명 중심지로 대도약

전북도,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 개최... 新산업 육성 추진

전북도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농생명연구협의체 22개 연구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발족한 농생명분야 핵심 R&D 사업들을 발표하는 '전북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에서 조성 중인 식품(익산), 종자·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순창), 첨단농업(새만금 등) 5대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산업 경쟁력 원천 및 글로벌 도약'을 목표로 농생명 4차산업기술을 연계한 '농생명 新산업·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북도는 식품, 미생물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농생명소재, 식품, 스마트팜분야 등 11개사업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新농생명 소재·식품산업 성

장을 도모하고 앞으로 식의약, 동물용 의약품 등 농생명 新산업에 8개사업, 35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형석 실장이 '농식품 R&D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김대혁 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의 자원 미생물산업 육성 방향', 최주환 전 전북대농생명공학부 교수가 '전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이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농생명소재산업 육성', 장한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이 '글로벌 농식품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제품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농진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전북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역산업평가단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농생명 R&D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날 발표된 사업들에 대해 이미 협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식품연구기관, 대학 등과 사업의 필요성, 구체화 등 논의하고,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이 농생명·농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R&D는 우리 도가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핵심동력으로 전북 농생명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전북도가 농생명 新산업의 중심지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농생명 新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반구축 및 사업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지방의회의원 61.8%가 초선... 의정활동역량 강화 위해 연수기관 설립 절실”

행안부,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 필요성 공감... “적극 검토할 것”

전북도의회 송승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은 지난 31일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 및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에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의원 3649명 가운데 61.8%가 초선이며 지방의원과 수시로 바뀌는 사무직원 인력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기

관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우선 지방의회 교육연수센터를 두고 지방의회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기관 또는 센터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국회지원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인재 기획조정실장도 “지방의원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다”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타당성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단은 이와 함께 행안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과 최훈 지방행정정책관, 노홍석 혁신정책과장과의 만나 연수기관 설립지원을 부탁했다.

/김진성기자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 미래산업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고용 현안 머리 맞대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가 지난 31일 2019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미래(탄소)산업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했다.

회의는 고용노동부 정주지청, 전주시 관계자와 지원기관이 참석했으며, 전상문 융복합첨단소재 미니클러스터 회장 과 (주)테크카본, (주)테크온, 씨에스(주) 등 도내 탄소산업 관련 기업체 및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도내 탄소기업의 인력 및 훈련 수요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탄소 소재 및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과 판로개척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라북도 전략산업별(자동차부품산업분과, 농식품, 생명산업분과, 미래(탄소)산업분과, 정보통신, ICT산업분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산업별 인력양성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산업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오픈이던 리더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선홍 위원장은 “전북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탄소산업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갖춘 탄소기업이 성장하여 산업기반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문화된 법원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원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이 관여할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 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5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원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심재권, 유동수, 전혜숙, 김중민, 김관영,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김진성 기자

## “활동지원사의 휴식권과 수급자 안전 보장을!”

김광수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 발의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지난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